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7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신복자,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정준호, 최민규,
황철규 의원(25명)

1. 주문

- 119구급대의 현행 등급별 차량 기준을 하한 기준(1급 2대 이상, 2,3급 1대 이상)으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한편, 구급대 인력 배치 기준을 구급차 1대당 최대 12명까지로 확대하여 4인 정원의 구급대 운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119구급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현재 각 시·도의 소방력 운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에 따라 소방서 및 출동대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1급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는 최대 2대까지만, 구급대원은 최대 18명까지만 배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구급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서울의 경우 구급차 1대당 출동건수 및 이송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법령이 정한 구급차 2대, 구급대원 18명의 상한 기준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운영대수와 인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센터에 구급차를 2대 이상 배치하여 출동을 분산시키고 구급차 1대당 1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4인 1조 구급대의 운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역의 특성과 구급수요를 반영하여 1급 구급대에 구급차 2대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구급대 등급별 차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구급차 1대당을 기준으로 구급대원을 12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4인 정원 구급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4. 이송처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실

119구급대의 인력 및 구급차 배치기준 현실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구급차 1대당 연간 출동건수는 3,461건, 이송건수는 1,766건, 이송환자 수는 1,7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의 구급대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도별 소방력 운영은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소방청 훈령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에 따라 소방서 및 출동대별 등급을 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른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 기준은 구급대 등급별로 1급은 18명, 2급은 15명 또는 9명, 3급은 9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7]에 따른 구급차의 배치기준은 1급은 2대, 2급 1~2대, 3급 1대로 그 이상을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령으로 인해 출동건수가 많고 업무 강도가 높은 안전센터의 경우 구급차를 2대 이상 배치하거나 4인 1조로 구성된 구급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구급대원의 출동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제약은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구급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구급대원의 업무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1급 구급대의 경우 2대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현행 구급대 등급별 구급차 배치 대수를 하한 기준으로 전환하고 또한 구급차 1대 당 구급대원을 12명까지 둘 수 있게 하여 4인 구급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방청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119구급대의 현행 등급별 차량 기준을 하한 기준(1급 2대 이상, 2,3급 1대 이상)으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한편, 구급대 인력 배치 기준을 구급차 1대당 최대 12명까지로 확대하여 4인 정원의 구급대 운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119구급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7]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현행				개정안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6.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배치인력	18명	15명 또는 9명	9명	배치인력	구급차 1대 기준 9명 또는 12명		
<p>< 비교 ></p> <p>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u>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u>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u>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u>으로 배치할 수 있다.</p> <p>나. (생략)</p> <p>다. (생략)</p>				<p>< 비교 ></p> <p>가. ----- -----, <u>3교대 또는 4교대 근무인력</u> <u>을 기준</u>----- . 다만, ----- ----- <u>2교대(2조 1교대) 인력</u>----- -----.</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붙임 2.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7)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

○ 소방서 하부단위 등급선정 기준

현 행				개 정 안			
2. 119안전센터(구급대) 등급산정 기준				2. 119안전센터(구급대) 등급산정 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산정 기준	생략			산정 기준	생략		
a+β+y=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a+β+y=	8점 이상 또는 직할구급	5~7점	4점 이하
차량 / 인력	구급차 2대 /18명 (3인탑승×3교대×2대)	구급차 1~2대/ 9~15명 (3인탑승/2인탑승×3교대)	구급차 1대/9명 (3인탑승×3교대)	차량	구급차 2대 이상	구급차 1대 이상	구급차 1대 이상
				인력	구급차 1대 기준 9명 또는 12명		